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7. 3 선고 2024가단224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망 A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B

피 고 파주시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4. 6. 19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대 287㎡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9. 8. 30. 접수 제112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관계

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3호증, 을 제1호증, 제2호증, 제3호증, 제4호증,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피고는 1978년경 파주시 D 대 287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대하여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에게 3년 거치 후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간 균분 상환 조건으로 751,307원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융자금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피고는 1979. 8. 30. 이 사건 융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, 채권최고액 751,307원으로 된 근저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을 설정받았다.

다. F는 1980. 9. 17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. 9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A은 1992. 3. 26. 이 사건 토지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1. 2. 9.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후 A은 사망하였고 2023. 9. 11. A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융자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를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1985. 12. 31.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융자금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.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7분의 2 지분을 소유하였던 A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서 위 공유지분에 기초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융자금 특별 회수 독려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 독려 반을 편성 운영하여 이 사건 융자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융자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융자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유빈